

강한공주 행복한시민

#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30호 2022. 9. 27.(화)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공주시 편집 :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조 례】**

제1543호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공주시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1544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 7

제1545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1546호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

제1547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1

제1548호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41

제1549호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48

제1550호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57

제1551호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 ..... 64

**【규 칙】**

제636호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71

공주시의회 규칙 제 637호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73

**【공 고】**

제2022-1997호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 공고 ..... 75

제2022-2007호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82

제2022-2055호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93

**【고 시】**

제2022-15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96



등 2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주시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9월 27일

공주시 조례 제1544호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지역 지능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5.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해소
6.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8.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정보개방과 관련된 사항
9. 초연결지능 정보통신망 이용 활성화
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
11.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지능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역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이나 지능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능정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2.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
3.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역량 교육) ① 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

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지능정보화역량 교육) 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지능정보화사회 적응과,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자체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시행할 때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장비 확보) 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장비와 우수 교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발전) 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존엄·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5.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13조(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하 “정보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

약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성 보호조치) 시장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생활 보호 설계) ①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수집, 보관, 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는 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보안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유출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9월 27일

공주시 조례 제1545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반포면 공암3리 2반 관할구역란 중 “**송곡로 55-4, 55-10, 55-12,**

63”을 “송곡로 55-4, 55-10, 55-12, 59, 63”으로 하고, 반포면 봉곡2리 1반란 다음에 2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반포면	봉곡2리	2반	솔바람	
-----	------	----	-----	--

별표 월송동 행정리.통명란 중 월송5통 다음에 월송6통, 월송7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월송동	월송6통	1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1동 101호~1506호
		2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2동 101호~712호
		3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2동 801호~1312호
		4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3동 101호~712호
		5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3동 801호~1306호
		6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4동 101호~812호
		7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4동 901호~1606호
	월송7통	1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5동 101호~610호
		2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5동 701호~1504호
		3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6동 101호~1004호
		4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7동 101호~812호
		5반	월송동 671, 공주월송LH 천년나무 4단지아파트 408동 101호~1506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반포면 봉곡2리 관할구역란 중 “**원당**”을 “**원당, 솔바람**”으로 한다.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9월 27일

공주시 조례 제1546호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관하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총무담당”을 “총무·민방위 담당”으로, “총무업무”를 “통합방위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 6.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5조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민방위대”를 “예비군·민방위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을 “예비군 육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담당 간사가”를 “부시장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안전관리과장이되며”를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

분야별 간사	간 사 별 사 무
<p>1.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p>	<p>가.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업무                      나. 정기, 수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훈련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공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 업무                      마. 민방위대 운영·교육훈련,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사.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p>
<p>2. 작전담당 간사</p>	<p>가.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공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작전계획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p>
<p>3. 예비군담당 간사</p>	<p>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 업무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p>
<p>4. 경찰담당 간사</p>	<p>가. 경찰작전 및 운용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p>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9월 27일

공주시 조례 제1547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박람회의 개최 및 추진

##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이·통장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이

전에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신청한 사람

2.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10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위원 예비후보자의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공개 추천방식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⑧ 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내용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중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두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

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

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6.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관 또는 시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

읍 각 호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③ 읍면동장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해 시장 및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검토하여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장 주민자치센터

제21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2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교육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문화행사, 취미 교실,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2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 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

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자가 저소득층이거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은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해당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2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료등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실비 등)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주민자치협의회

제32조(설치) 시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협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제3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읍면동의 모든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원은 읍면동별 자치회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임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4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회장·부회장·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회회의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5조(협회 지원) ① 시장은 협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주민자치회 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제36조(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사임) 협회 위원은 제12조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 자치회장 또는 위원직에서 해촉된 경우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기타)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39조(감독)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1조(포상)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반포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9월 27일

공주시 조례 제1548호

공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공주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구성비·장학금 지급 등
3. 공주학아카이브사업 지원

4. 취·창업 능력 향상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5.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6.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공주시 지방대학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주시 소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업무담당국장,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9월 27일

공주시 조례 제1549호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공주시

에서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안에 입주하여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 가. 설치부담금
  - 나. 사용료
  - 다.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6. “입주기업체협의회”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 또는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자동수질측정기기(TMS), 배출유

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염분농도계, 스크린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배출기준)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시장과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採水) 등을 목적으로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분양가에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자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서 추가로 처리구역 내 편입 등으로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처리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 및 처리 시설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추징)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하여 폐수관로 또는 처리시설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미분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의 사용)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의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운영자가 원인 분석 후 사업자대표회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에 따라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 하며, 잘못된 부과금액은 익월분에 반영하여 정상 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납부의무의 중단) ①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기 납부된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되며,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처리시설의 운영) 시장은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수탁운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사업장 양도 등 통지) 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반드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①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 제49조의6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시장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배수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부착 등에 관한 사항

5. 제10조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 사용료의 추징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제22조의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관련 업무를 운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동 업무가 본 계획의 관련 조항 및 상호협약의 협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자에게 처리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유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9월 27일

공주시 조례 제1550호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공  
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공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감독관

③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공주시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 9. 16.)에서 의결된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최원철**

2022년 9월 27일

공주시 조례 제1551호

**공주시 공주알밤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특산물인 알밤과 밤가공상품 등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건립한 공주알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알밤 소비 진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알밤센터”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공주알밤 홍보·판매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시설에 입장하여 관람하거나 상품을 구매·취식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중 시에 입점허가를 받고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공주시 공주알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주시 미나리2길 7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알밤과 밤가공상품의 전시·판매
2. 알밤 및 밤가공상품 홍보 및 시장 정보수집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특산물판매장 및 식당(카페)
2. 전시체험 및 문화시설
3. 그 밖의 편의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판매시설 운영방법) ① 시장은 현장 판매, 택배배송 지시, 판매대금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현장 납품, 주문접수, 상품배송 등을 담당한다.

② 입점업체는 주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주문 상품을 택배운송 업체를 통해 상품 주문자에게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부족·천재지변 등으로 상품배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문당일 즉시 주문자와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대금 관리) ① 시장은 센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서 시 금고 등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 책임자는 센터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회계 담당자는 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회계 책임자는 회계 담당자에게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자료를 비치·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금 수납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은 월 1회 매월 10일에 전월 판매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판매촉진 활동) ①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

으로 판매촉진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입점업체와 제5조제2항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자는 희망할 경우 제1항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등 관리·운영
2. 판매상품 선정, 품질관리, 입점업체 관리
3.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추진
4.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센터의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주알밤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시 발생한 각종 갈등·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한 사항
3. 센터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센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외식, 음식관광,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2. 공주알밤 관련 단체·기관 임원 및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

사는 센터 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위촉된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18조(수당)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점업체 및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한”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총회(해당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된 사람
2.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리·통의 관할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만으로 구역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6조제3호 중 “사회적”을 “각종 이권과 불법행위에 개입하였거나 사회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의 전입 확인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금품등 수수의 금지) 이통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9.16.)  
에서 의결된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주시의회의장                    윤   구   병   인

2022년 9월 27일

공주시의회 규칙 제637호

###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의 형사벌이  
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신청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  
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주시의회 인사위원회에 증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 공고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공 주 시 장

### 1.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

#### 가. 근대건조물명 : 요골공소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요골길 15
- 소유자 : 재단법인대전교구천주교유지재단
- 수량 : 1동(공소 본당)
- 시기 : 1938년
- 지정사유
  - 요골공소는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에 건립되어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작은 예배 장소로 1866년 병인박해 이후 각지에서 모여든 신자들이 일군 교우촌에서 기원함
  - 1883년 프랑스 선교사 두세가 충청도 지역을 순회할 때 최초의 공소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음. 공주 성당의 전신인 요골공소는 신앙 자유기에 공주 천주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는 여러 명의 신부와 수도자를 배출하면서 중요한 성소의 역할을 하였음
  - 특히, 요골공소는 초기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건립된 한옥 공소 중의 하나로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근대건축물로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나. 근대건조물명 : 유구 창말뒤길 7 가옥**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창말뒤길 7
- 소유자 : 이종각
- 수량 : 3동(안채, 사랑채, 창고)
- 시기 : 1925년
- 지정사유
  - 유구 창말뒤길 7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가 ‘ㄷ’자 행태로 배치되어 있음
  - 안채, 사랑채, 창고 등의 건축물이 과거 모습과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현재는 거주 생활 공간으로 활용
  - 근대 유구 지역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배치와 한옥 형태를 잘 보여 주고 있어, 근대건조물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다. 근대건조물명 : 축하루**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작은골1길 37
- 소유자 : 조수근
- 수량 : 1동(문간채)
- 시기 : 1949년
- 지정사유
  - 축화루(祝華樓)는 농촌지역 근대한옥의 문간채로, ‘축화루’라는 액판은 중앙에, ‘하정(荷汀)’이란 별호는 오른쪽에 있으며, 하정은 소유주의 고조부 조병필의 호임
  - 원래는 축화루 앞에 홍살문이 있었고 사랑채, 안채 사당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문간채만이 과거 모습을 잘 보존·관리하고 있어 유구 지역의 근대건조물로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라. 근대건조물명 : 반포 길만길 9 가옥**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길만길 9

- 소 유 자 : 서경자
- 수 량 : 4동(안채, 사랑채, 문간채, 창고)
- 시 기 : 1900년대 추정
- 지정사유
  - 길만길 9 가옥은 ‘ㄱ’자 형식의 안채와 ‘ㄴ’자 형태의 사랑채가 전체적으로 ‘口’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과거 모습과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관리되고 있음
  - 특히, 건물배치와 한옥 형태의 건축물 등은 근대 반포지역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반포지역의 근대건축물로서 그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마. 근대건조물명 : 최인식 의관 고택**

-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구억말길 14-5
- 소 유 자 : 최영규
- 수 량 : 1동(문간채)
- 시 기 : 1900년대 추정
- 지정사유
  - 최인식 의관 고택은 과거 안채, 문간채, 창고 등의 건축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문간채만이 과거 모습을 잘 보존·관리되고 있음
  - 특히, 지붕은 벗짚 또는 시멘트기와를 올릴 수 있는 가는 부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한옥의 형태를 따르나 부재 수급, 경제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구구조를 적용하였음. 정안지역의 근대건축물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바. 근대건조물명 : 돈년공 문중 종손댁**

-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구억말길 63
- 소 유 자 : 최상태
- 수 량 : 1동(안채)
- 시 기 : 1943년

○ 지정사유

- 돈년공 문중 종손택은 ‘ㄱ’자형 안채로 농촌지역 전통 한옥 건축물임
- 과거에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안채, 문간채, 사랑채 등의 건축물이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안채만이 과거 모습 그대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정안지역의 근대건축물로 그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사. 근대건축물명 : 원효정사 법당**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산2길 18

○ 소유자 : 정종화

○ 수량 : 1동(법당)

○ 시기 : 1912년

○ 지정사유

- 원효정사 법당은 한식 목구조 형태로 건립된 종교건축물 중 하나로 과거 모습과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관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특히, 내외부의 목구조가 노출되어 있어, 공주 지역 근대한옥 형태의 종교시설 구조와 형태를 볼 수 있는 근대건축물로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아. 근대건축물명 : 봉황로 102 가옥**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02

○ 소유자 : 정재운

○ 수량 : 1동(안채)

○ 시기 : 1920년대 추정

○ 지정사유

- 봉황로 102 가옥은 일본식 가옥(일식 목구조)으로, 건물의 내부구조는 창문, 도쿄노마, 오시이레(불박이장) 등 많은 부분에서 전형적인 일본식 주택의 요소들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어 당시의 주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음

- 과거 건립 당시 모습 그대로 잘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공주 원도심 지역의 일본식 주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 근대건조물로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 자. 근대건조물명 : 큰샘2길 10-5 건물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큰샘2길 10-5
- 소유자 : 윤희수
- 수량 : 1동
- 시기 : 1936년
- 지정사유
  - 큰샘2길 10-5 건물은 서양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근대건축물로 이후 우측면으로 목구조 건물이 증축되어 조성됨. 조적조 양식으로 전면 입구와 상부 포치가 조성되어 있으며, 양옆으로 가장 기본 형태의 도리스식 오더가 세워져 있음
  - 과거, 건립 당시 모습 그대로 잘 보존·관리하고 있고, 공주 원도심 지역의 서양식 건축양식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 근대건조물로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 차. 근대건조물명 : 용당길 55-7 가옥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55-7
- 소유자 : 김민선
- 수량 : 1동(안채)
- 시기 : 1950년
- 지정사유
  - 용당길 55-7 가옥은 ‘ㄱ’자 형식의 안채와 담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공주 원도심 내 협소한 대지의 특성에 맞춰 건립하였음
  - 과거 건립 당시 모습 그대로 잘 보존·관리되고 있고, 공주 원도심 지역의 주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 근대건조물로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카. 근대건조물명 : 제민천3길 56 건물**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제민천3길 56
- 소유자 : 김영란
- 수량 : 1동
- 시기 : 1960년
- 지정사유
  - 제민천3길 56 건물은 1960년 직물공장 건물 및 창고로 사용되던 조적조 건물로, 내부의 목재 트러스와 외관의 형태가 원형의 모습으로 남아있음
  - 산업화 시기 원도심에 건립된 공장건축물의 형태와 외형을 그대로 잘 보존·관리하고 있어 근대건축물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타. 근대건조물명 : 산성2길 7-1 가옥**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2길 7-1
- 소유자 : 이민호
- 수량 : 1동
- 시기 : 1955년
- 지정사유
  - 산성2길 7-1 가옥은 1950년 건립 시 일반 주택과는 다른 건축양식과 고급재료를 사용하고 외관을 노란색 타일이나 페인트로 마감하여 원도심을 대표하는 ‘노란 양옥집’으로 알려짐
  - 건립 시 모습 그대로 잘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의 고급 주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 근대건조물로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파. 근대건조물명 : 산성2길 8 가옥**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2길 8

○ 소 유 자 : 한인석

○ 수 량 : 1동

○ 시 기 : 1930년

○ 지정사유

- 산성2길 8 가옥은 ‘ㄱ’자형 안채와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도심 내 협소한 대지의 특성에 맞춰 건립된 중류층 한옥의 배치 및 건축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과거 건립 시 모습 그대로 잘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의 중류층 주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 근대건조물로서 가치가 높아 보존하고자 함

2. 공주시 근대건조물 지정 일자 : 2022년 9월 27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840-8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22 - 2007호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 훈령 제219호가 전부개정되어 2022.1.1.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현행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변경 및 인용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규칙의 제명 변경 (안 제1조)
  - 상위 법규 제명 변경에 따라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 상향 조정 (안 제5조)
  - 공사 또는 토지금액 등의 상향 등으로 현실에 맞게 전결금액을 조정함
- 상위 훈령 인용 조문 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상위 훈령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규정 현행화
- 현행규칙의 미비사항 개선 보완(안 제2조, 안 제5조)
  - (관직지정) 조문에 회계관계공무원 사고시 직무대리 규정 명시(안 제2조제3항)
  - (예산집행품의) 조문에 의회사무국 내용 명시(안 제5조제2항)
  - 예산집행시 품의생략 가능한 항목을 신설하여 명시(안제5조제4항)
- 부칙조항에 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의 변경내용 명시(8건)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회계과(경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251 / FAX : 041-840-2317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청 회계과 경리팀 (☎ 041-840-8251)

제출방법 ㄱ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ㄴ FAX : 041-840-2317

##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제2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추정가격 4억원”을 “추정금액 10억원”으로, “2억원”을 “5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정가격 2억원”을 “추정금액 5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추정가격 1건당 3천만원”을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추정가격”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제6조 중 “제2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49조제2항”을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97조”를 “제77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35조제1항”을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 「공주시 문예회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③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④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⑥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공

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공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공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사무전결처리 사항							
공통사항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담당자		담당관 과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국 장 소 장	부시장	시장
		주무관	팀장				
예산 집행	1. 추정금액 10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가. 국·직속기관·사업소 소관	기안			○		
	나. 담당관 소관	기안				○	
	3.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제를 받아야 함.	기안		○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u>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② (생략) <u>&lt;신 설&gt;</u></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u></p>
<p>③ (생략)</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  
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  
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가격 4억원 이  
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  
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  
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  
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  
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가격 1건  
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  
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  
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  
한 훈령」-----

----- 제11조제1항-  
-----  
-----  
-----  
-----.

1. ----- 추정금액 10억원 --  
-----  
--- 5억원 -----  
-----  
----- 2억원 ----  
-----
2. ---- 추정금액 5억원 -----  
-----  
-- 2억원 -----  
-----  
----- 1억원 -----  
-----
3. ----- 추정금액 1건  
당 5천만원 -----  
-----  
-----  
-----.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  
가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  
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2  
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구

-----.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 추정금  
액 -----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을 생략할 수 있  
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 제12  
조제3항-----  
-----  
-----

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을 말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

제7조(지출의 절차) --- 제32조제2항-----

-----  
-----  
-----  
-----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 제77조제4항-----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 제105조제1항 -

-----  
-----  
-----  
-----  
-----.

② (현행과 같음)

##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7일

공 주 시 장



###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 간 : 2022. 10 11. ~ 11. 4. 오전 10시~오후 4시(수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

###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7. 문의처 : 공주시청 경제과 (전화 041-840-8282)

【 붙임 】

##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일정표

시·군명	검사일자		검사장소	검사대상 지역 (읍·면·동)	비고
공주시	10.11.(화)	10:00~16:00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일원	
	10.13.(목)	10:00~12:00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일원	
		14:00~16:00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일원	
	10.14.(금)	10:00~12:00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일원	
		14:00~16:00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일원	
	10.17.(월)	10:00~12:00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일원	
		14:00~16:00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일원	
	10.18.(화)	10:00~12:00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일원	
		14:00~16:00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일원	
	10.20.(목)	10:00~16:00	신평면사무소	신평면 일원	
	10.21.(금)	10:00~16:00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산성시장 일원	
	10.24.(월)	10:00~16:00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웅진동 일원	
	10.25.(화)	10:00~12:00	중학동 주민센터	중학동·금학동 일원	
		14:00~16:00	옥룡동 주민센터	옥룡동 일원	
	10.27.(목)	10:00~16:00	신관동 주민센터	신관동·월송동 일원	
	10.28.(금)	10:00~16:00	웅진동 주민센터	검사 누락자	
10.31.(월) ~ 11. 4.(금)	10:00~16:00	소재장소 검사	검사 신청지	수요일 제외	

주1) 해당지역 검사일정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타 일정의 장소에 검사를 받을 수 있음.

주2) 소재장소 검사 신청 : **9.30.(금)까지** 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별지 제21호서식]**

# 【 붙임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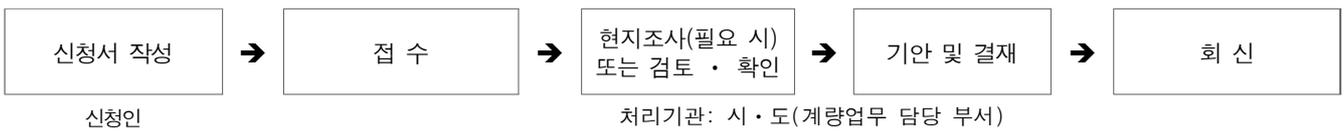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	--

### 처리절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m<sup>2</sup>)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관계도면 : 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적 (㎡)	산림보호구역 현황			주소	소유자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면적(㎡)	금회 해제면적 (㎡)	구분		
계			3필지	3,389	318	318			
공주	우성	한천	120-29(임)	3,137	299	299	제1종수 원함양 보호구역 (1988.06 .20.지정)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공주	우성	한천	120-31(임)	240	7	7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
공주	우성	한천	산20-9	12	12	12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145	임*재

※ 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FLIS) 구적에 의함

3. 지정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

4.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1의2(농어촌도로)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열람 등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등재 및 공주시 산림경영과에 비치,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산림공원과(☎041-840-8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23.

공 주 시 장